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2001년 4월 9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I. 제안이유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수급이 부족하여 진료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보건소의 업무 일부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업무대행의 범위를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업무대행 절차를 사전에 보건소장이 필요성 및 대행의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등을 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업무대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등이 발생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업무대행자가 진료업무에 충실히 하기 위하여 지도·감독토록 함(안 제9조).

III. 관련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24조 제2항(권한의 위임 등)

I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업무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2조(목적)에서 “지역보건법 제24조” 다음에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 다음에 “제2항”을 삽입하여야 합법하다고 봄.